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대통령공고 제294호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에 관한 공고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궐원된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공고한다.

2019년 11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인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회의원이 궐원된 다음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선거구명 | 선거구역 |
|-----------------------|-----------------------------------|
|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밀양시 일원,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창녕군 일원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25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MZIR098 및 유전자변형 면화 GHB81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 대상품목 | 신청자 | 개발자 | 승인번호 | 승인일 |
|-------------------|-----------|--|----------|---------------|
| 유전자변형 옥수수 MZIR098 | 신젠타코리아(주) |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on behalf of Syngenta Crop Protection AG and its affiliates | 제2019-6호 | 2019. 11. 20. |
| 유전자변형 면화 GHB811 | 한국바스프(주) | 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 | 제2019-8호 | 2019. 11. 20. |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16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No. | 과태료 고지번호 | 채납자 | 채납자 실명번호 | 최초 부과 과태료 금액 | 채납자 주소 |
|-----|---------------------|----------|--------------------------------|-----------------|-----------------------|
| 1 | 0178190004530002319 | (주)투비소프트 | 735-87-001** 110111-57633** | 10,000,000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

4.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506)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증가산금 안내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채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체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채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채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